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
- 제32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계절적 취약요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전통적인 폭염지역인 대구보다도 더 심각한 고온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등에게 생계비, 의료비, 급식관련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계절적 취약요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조례 제5조 제8호에서는 겨울철 월동대책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전기료 지원 등의 사업이 이미 실행 중에 있으나, 동조 제12호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도 폭염 관련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에도 폭염이 밤낮으로 지속되어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절적 원인에 의한 지원에 있어 여름과 겨울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5조 제8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월동대책비"를 "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로 확대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들이 계절적 취약 요인으로부터 형평성 있는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